



수험소식 및 수험자료

##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, 20년간 공직 제한

### - 실·국장급 임기제공무원 선발 방식 다양화, 다자녀 양육자 우대방안 마련 -

#### I. 개요

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.

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·국장급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발 방식을 다양화한다.

인사혁신처(처장 김승호)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「국가공무원법」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.

공직사회 유연한 인사체계 구현 및 입법미비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첫째,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간 제한한다.

앞서 현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「국가공무원법」 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(2020헌마1605, 2020헌마1181)했다.

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·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

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원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.

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,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간 임용이 제한된다.

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및 헌법상 공무원임권 보장 간의 균형 등 현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.

둘째, 다자녀 양육자에게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 조항이 마련된다.

현행 「국가공무원법」 규정은 공무원의 임용을 시험성적·근무성적 및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는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, 장애인·이공계 전공자·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조치가 가능하다.

앞으로는 이러한 우대 대상에 ‘다자녀 양육자’를 추가해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.

다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도 양육환경을 고려해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.

셋째, 각 부처 실·국장급 임기제공무원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가 다양화된다.

현재는 실·국장급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돼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해서만 선발해야 하는 등 획일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었다.

이에 이번 법 개정으로 각 부처는 직위 특성을 고려해 개방형 직위로 지정·운영하거나 개방형직위가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, 각 부처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한다.

넷째, 직위해제자 결원보충 제한기간이 단축된다.

현행 규정에 따르면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비위로 조사·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결원보충을 할 수 있었다.

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결원보충 제한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한다.

다섯째, 각 기관의 원활한 징계 절차 운영을 위한 규정이 정비된다.

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직접 징계 사유에 관한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, 징계 처분 결과 통보 규정도 효율적으로 정비한다.

김승호 인사처장은 “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알맞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”며, “인사처는 공직사회 신뢰를 제고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## II. 「국가공무원법」 개정안 세부 과제 목록

구 분		주요 개정내용	시행일
①	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규정 정비	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사유 정비 ※ 2020헌마1181, 2020헌마1605	공포 즉시 시행
		②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당연퇴직 관련 규정 정비 ※ 2020헌가8	공포 즉시 시행
②	다자녀 양육자 인사 관리상 우대근거 마련	○ 국가공무원법상 인사관리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 추가	공포 즉시 시행

[3]	유연한 인사시스템 구현	① 실·국장급 직위 중 임기제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에 대한 선발 방식 다양화	공포 즉시 시행
		② 형사기소 및 중대 비위로 인한 조사·수사로 직 위해제된 경우 결원보충 제한기간 단축	6개월 후 시행
[4]	원활한 징계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	① 소속 기관장이 징계사유 관련 수사기록을 요청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 마련	6개월 후 시행
		② 징계처분 결과 통보권자 규정 정비	공포 즉시 시행
[5]	기타 조문 정비	○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, 육아휴직 대상 자녀 의 연령기준 규정 정비(만8세 → 8세)	공포 즉시 시행